

◆ 政府 施策 ◆

工業基盤技術과제 선정 –상공부, 3년간 300억원투입 개발계획 –

상공자원부는 '25.8KV GCB 차단기(옥내용)' 등 87개 기술개발과제를 '93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1차 신규과제로 선정,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해당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술개발과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로서 작년에 실시한 공업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한 개발 계획 공모와 약 1천명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의 심의를 걸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상공부는 이들 과제의 개발을 위해 금년중 총 13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아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에서 69억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62억원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올해 기계·자동화분야의 경우 경면가공용 고정밀CNC선반 개발(주관기관 : 기계연구원, 참여기업 : 한국화약·안마스정밀기계)등 22개 과제에 19억원, 섬유·화학분야는 신감각 표출형 섬유개발(주관기관 : 코오롱기술연구소, 참여업체 : 코오롱·한국염색공업·동화)등 21개 과제에 13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금속·재료는 A1용탕주입 자동화시스템 개발(주관기관 : 부산대학교, 참여기업 : 정풍)등 17개 과제에 14억원, 전기·전자분야는 진동·소음의 주파수특성을 이용한 전자부품 자동검사장치 개발(주관기관 : 한주기술연구소, 참여기업 : 한주엔지니어링·금산엔지니어링)등 16개 과제에 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보통신분야는 이동통신 중계장치 개발(주관기관 : 에이스안테나연구소, 참여기업 : 에이스안테나)등 11개 과제에 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관기관별로는 기업주도과제가 54개로 전체의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은 19개로 전체의 22%, 정부출연연구소는 10개로 11%를 차지했다.

참여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총 126개로 전체 162개사의 78%에 달했고 기업간 공동개발과제는 57개로 전체의 66%를 차지,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공부는 '93년도 2차 신규과제를 오는 9월중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기업 및 대학·출연연구소로 부터 총 80개의 개발계획서를 신청받아 심의중이다.

乾電池, 무공해 제품만流通허용 -水銀함유량 1ppm이상 輸入등 不許-

상공자원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경부터 수은이 1ppm이상 함유된 망간 및 알칼리건전지에 대해서는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해건전지의 국내 생산은 물론 수입까지 금지되게 됐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바젤협약이 작년 5월부터 발효,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고 국내에서는 서통·로케트전기등 주요업체들이 수은함량이 극히 저온(0.01-0.04ppm) 무공해건전지(Green Battery)를 개발, 양산체제를 갖춤에 따라 이같은 규제책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건전지를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경부터 기준초과 건전지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무공해건전지의 개발 및 판매를 지원키 위해 무공해건전지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한데 이어 무공해건전지를 첨단전자부품으로 지정,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우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라디오 및 카세트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망간 및 알칼리건전지는 '92년중 1700만달러 상당이 동남아등지로 부터 수입됐는데 이들 건전지는 수은함량이 35ppm수준에 달해 공해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한편 美國은 뉴저지등 주요 州정부에서 작년 1월부터 수은함량이 1ppm이상인 망간,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96년부터는 거의 모든 州에서 공해건전지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으로 있다.

수은전지의 경우는 많은 주들이 이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나카드전지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등 규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전지수요는 지난해의 경우 알칼리망간건전지는 내수가 전년보다 35.6%가 증가한 2065만달러, 수출은 17.7%가 증가한 341만달러에 달했고 망간건전지는 내수가 3.1%가 증가한 9216만달러, 수출이 10.5%가 감소한 1069만달러 등으로 1차전지 총수요는 내수가 5.4%가 증가한 1억2567만달러에 달한데 비해 수출은 71.7%가 감소한 1439만달러에 그쳤다.

1차전지의 국내생산은 2.1%가 증가한 1억976만달러 상당에 그친데 비해 수입은 12.3%가 증가한 3030만달러에 달했다.

니카드전지등 충전사용이 가능한 2차전지의 수급은 내수가 43.5%가 증가한 1억1395만달러, 수출은 15.8%가 증가한 1억7219만달러, 국내생산은 28.6%가 증가한 2억4595만달러, 수입은 5.7%가 증가한 4019만달러에 달했다.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적극 추진 -참여신청 8月 31日까지 접수-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자급도 향상을 위해 태양광발전·연료용알콜생산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94년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참여신청을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60-10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상공자원부는 '94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은 기초연구보다는 실용화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주도에 의한 산·학·연 협동연구로 실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석탄가스와 복합발전분야는 선도기술사업(G-7프로젝트)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용보급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개발 실증실험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개발 및 실증실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시스템 실용화 개발, 연료용 알콜생산 및 이용·보급기술개발 등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 개발참여자에 대해 재정과 석유사업기금 등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분야별 연구개발추진 과제는 태양열분야의 경우 집열기의 고효율화 및 低價化 기술개발, 고효율축열장치 개발, 장기축열기술개발, 低價고효율 온수이용시스템기술의 상용화, 중·고온용 집광형 집연장치 개발등이다.

또 바이오에너지분야는 수송연료용 알콜제조기술 개발, 연료용알콜 보급을 위한 관련제도의 연구, 바이오가스 생산기술개발 등이고 폐기물이용분야는 직접소각 및 폐열회수이용기술 실용화개발, 쓰레기매립장가스 이용기술개발 등이다.

수소에너지분야는 저가연료용 수소제조 기술개발, 수소저장·이용기술개발 등이고 해양에너지분야는 해양에너지 파력발전장치 개발, 조력발전시스템 최적화연구 등이다.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술활동위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비의 100%이내, 산업기술연구조합은 80%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개인은 60%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참여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의 경우 재정에서 10억원, 석유사업기금에서 30억원등 50억원상당이 지원됐는데 상공부는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공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기준등 완화-

상공자원부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45호, '93. 6. 30)했다.

1. 개정취지

경제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채용범위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출력 3천㎾와트 이하의 수력발전설비를 전기설비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완화
 - 기사1급 자격소지자 : 현행 실무경력 3년에서 → 1년으로
 - 기사2급 자격소지자 : 현행 실무경력 5년에서 → 2년으로
-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완화
 - 1,000㎾이상 설비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소속직원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한 것을 →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이면 가능토록 완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의무 면제

- 전기분야 기능사2급 이상 또는 공고 전기과 졸업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도서·벽지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용량을 “500키로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

3. 이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7월 21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전력정책과장 503-9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9700件 개발 —기술개발과 同等한 金融·稅制지원 방침 —

정부는 국제경쟁력 핵심요소의 하나인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개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동등한 금융 및 세제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7년까지 500억원규모(재정 200억원, 업계출연 100억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00억원)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산업디자인 연구개발에 대한 공업기반기술자금과 공업발전기금의 지원규모('93년 25억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가전제품·사무용기기등 디자인비중이 큰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총 9700여건('94년 1천건, '95년 1200건, '96-'98년 6500건)의 디자인개발과제를 선정, 독창적인 디자인을 중점 개발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자인수준은 미국과 일본의 전반수준에도 못미치고 경쟁국인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에도 못미쳐 경쟁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제품판매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산업디자인육성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디자인 지도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 총 4900개('94년 700개, '95년 800개, '96-'98년 34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디자인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내에 산업디자인전문연수원을 설치, 산업체소속 디자이너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간 2천명 규모로 실시하고 대학생에 대한 인턴교육도 실시하는등 현장적용이 가능한 디자인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육성을 위해 현재 매출액 1억원이상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디자

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도 완화, 정책자금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에 디자인전문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산업디자인의 국제화를 촉진키 위해 디자인의 올림픽으로 지칭되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등 국제회의의 유치도 추진하고 한일산업기술 협력기금등을 활용, 외국디자인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개발원의 기능활성화도 적극 꾀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7일까지를 ‘디자인주간’으로 정해 각종 디자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93年度 貿易의 날 褒賞 요령 공고 —量보다 質의 고도화에 중점—

상공자원부는 금년도 제30회 ‘무역의 날’ 포상은 수출의 양적신장보다는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공고한 ‘9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포상요령’에 따르면 정부포상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포상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자기상표제품 수출모범업체와 우수품질제품 수출업체등 업계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수출신장률과 외화가득을,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국민경제기여도등 질적요소를 종합 평가키로 했다.

또한 대형무역상사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중소기업제품수출실적, 중소기업지원실적 등을 종합 평가키로 했다. ‘수출의 탑’ 포상도 억불탑의 경우 종전 1억불, 5억불 및 100억불까지 매 10억불마다 포상, 총 12종에 달하던 것을 1, 5, 10, 50, 100억불등 5종으로 축소했다.

대신 종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100만불, 500만불탑은 포상대상을 중소업체로 확대했으며 1천만불과 5천만불탑은 종전과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수여키로 했다.

수출실적인정범위도 축소, 외화입금증명서상의 실적만 인정키로 했으며 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

체간의 거래에 의한 로컬수출은 종전과 같이 1개사만 실적을 인정, 이중으로 수출실적이 잡히지 않도록 했다.

수출부문포상은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역업체의 대표와 종업원, 해외근무자등 무역업체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포상대상에 자기상표수출자(貿易協會·賀公추천)와 해외투자우수업체(재외공관장추천)를 추가했다.

대신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5년내 정부포상수상자는 정부포상추천에서 제외하고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많이 발병한 업체도 제외키로 했다.

업체평가는 수출실적('92년 7월 1일-'93년 6월 30일)에 의한 외화가득률 및 국민경제기여도등을 고려, 평가하되 신시장개척(중남미·아프리카등) 업체와 對日수출업체, 국내외유명규격획득업체,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 지방에 본사가 있는 업체 및 농공단지입주업체, 수출신장률이 높은 업체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불공정무역행위등 대외성가를 훼손한 업체는 감점키로 했다. 포상신청서 배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및 추천접수는 8월 9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회원사업부 및 국내 각지부에서 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변경 -154KV 내동, 문막 변전소 등 변경, 취소-

상공자원부는 동력자원부고시 제91-35호('91. 6. 29), 제91-54호('91. 9. 14)와 제90-82호('90. 12.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내동변전소, 154KV 문막변전소 및 154KV지도변전소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취소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48호, '93. 7. 2)했다.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변경

가. 154KV 내동변전소

- (1) 사업의 명칭 : 154KV내동변전소 건설공사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변경사유

- 동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원개발사업 구역이 일부 조정됨으로써 변전소 건설사업이 변경됨.

(4) 사업개요

- 전원설비 : 옥내 GIS형
 - 사업기간 당초 : 1991년 1월 ~ 1994년 6월
 변경 : 1991년 1월 ~ 1995년 10월
 - 사업구역 당초 : 8,117m²
 변경 : 7,787m²

(5)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토지(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나. 154KV 문막변전소

(1) 사업의 명칭 : 154KV 문막변전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변경사유 : 동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력개발사업구역이 일부조정됨으로써 변전소 건설사업이 변경됨.

(4) 사업개요

- 전원설비 : 옥외 GIS형
 - 사업기간 : 1992년 1월 ~ 1994년 6월
 - 사업구역 당초 : 22,904m²
 변경 : 15,515m²

(5) 법경수용 사용학 토지등의 명세

- 토지(소재지 :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밤계리)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취소

1. 사업의 명칭 : 154KV 지도변전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취소사유 : 택지개발지구와 중복됨에 따라 대지개발 지구내에서 변전소 위치를 변경하여 대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키 위해 본사업을 취소합니다.
4. 취소할 토지등의 명세
 - 토지(소재지 :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화정리)

**政府출연研究所 保有技術·特許 無償이양대상 117개業體 확정
－科技處, 기술개발 173억 시설·운전자금 291억 지원－**

정부는 신경제계획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및 특허의 無償이양 대상업체를 105개 과제에 117개 업체로 최종 확정하고 이달부터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외별도로 41개 중소기업에는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기업에 파견돼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科技處에 따르면 기술무상이양 대상업체 및 기술지도업체에게는 총 173억원의 기술개발자금과 291억원의 시설 및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최종 선정한 기술이양 대상업체를 연구소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개사> ▲한국과학기술원 <9개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개사> ▲한국기계연구원 <41개사> ▲한국화학연구소 <3개사> ▲한국원자력연구소 <6개사> ▲한국자원연구소 <4개사> ▲한국전기연구소 <8개사> ▲한국에너지연구소 <6개사> ▲한국해양연구소 <1개사> ▲시스템공학연구소 <1개사> ▲유전공학연구소 <1개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운영 방침 안내

○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 노무직에 대한 외국인 연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 255호)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의 국내 산업체 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다.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라. 기타 주무부처장이 추천한 산업체(상기 3개의 기준에 준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추천)

○ 특히 상기 '라' 항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에서는 '92년에 3D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이 해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등 10개 업종에 한정된 인원(전기·전자 900명)으로 외국인의 국내연수를 실시도록 추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 금년부터는 3D업종에 대하여 추가로 외국인 산업연수 추천을 실시하지 않고, 상공자원부의 추천을 받아 기입국하여 연수중인 외국인에 한하여 현행 최장 1년의 연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방침을 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제지원제도 안내

정부에서는 국내에너지 사용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세액공제제도(또는 특별상각제도)에 덧붙여서 '93. 1월부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준비금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업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제지원 내용을 알려드리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

2. 지원내용

가. 세액공제(또는 특별상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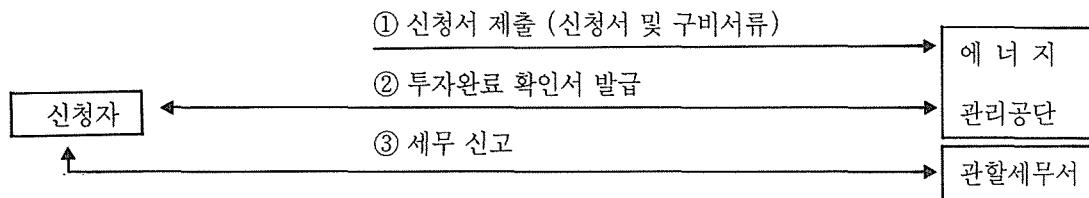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한 기업은 투자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 방법 중 하나를택하여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방법

-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외산기자재의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거나
- 당해 자산취득가액의 90/100을 특별상각

2) 투자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한 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제도

1) 지원방법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년도와 그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년도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범위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대체하는 등 기본적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준비금의 익금 환입

◦ 기한내 사용한 준비금의 환입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3년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균등 산입한다.

◦ 기한내 미사용한 준비금의 환입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4) 지원절차

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년도 : 투자준비금 명세서
- 준비금 설정후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 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 문 의 처 : 상공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02-503-9636~7)

에너지관리공단 기금관리부 (☎ 02-520-0291~2)

◆ 國內外 情報 ◆

日, 交流發電機 輸入 증대 예상 —수입관세 낮고 건설회사 수요도 왕성—

『엔高基調의 정착으로 아시아제품을 중심으로 해외기업들의 일본시장 공략이 활발하다. 그러나 일본시장은 경기침체를 반영, 고급품지향의 수입관행이 사라지고 일본기업의 해외생산품 역수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이와관련, 지난해 수입상품중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실